

제417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27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7)
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3)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2)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9)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5)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4)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4)
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1)
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6)
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2)
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
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
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3)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2)
1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2)
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6)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8)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7)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2)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8)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8)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

-
-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
 -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4)
 - 26. 한류기본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5)
 - 27. 한류산업진흥법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0)
 - 2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6)
 - 2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7)
-

상정된 안건

-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7) … 4
- 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3) ……………… 4
-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2) … 4
-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9) … 4
-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5) ……………… 4
-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4) ……………… 4
-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4) ……………… 4
- 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1) ……………… 4
- 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6) ……………… 4
- 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2) …… 4
- 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 …… 4
- 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 …… 4
- 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3) … 4
-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2) … 4
- 1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2) ……………… 4
- 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6) … 4
-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8) … 4
-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7) … 4
-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2) … 4
-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 … 4
-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8) ……………… 4
-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8) ……………… 4
-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 ……………… 4
-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 ……………… 4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4) … 4
26. 한류기본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5) 5
27. 한류산업진흥법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0) 5
2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6) … 5
2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7) 5

(14시04분 개의)

○**소위원장 박정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첫 회의인 만큼 출석하신 위원님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공주·부여·청양의 박수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 출신이라 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 주신 좋은 문화예술 분야의 법안을 심사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경청하고 저도 또 드릴 말씀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현 위원** 고양시 병 이기현 위원입니다.

상임위 배정받고 첫 법안소위여서요 저도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22대 국회에서 첫 심사하는 법안심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보겠습니다. 검토자료도 가져왔는데요. 의견도 좀 내도록 할 테니까 좋은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원 위원** 여수시을 출신 조계원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욱 위원** 부산 수영의 정연욱입니다.

수영도 문화도시로 선정된 이력이 있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상임위 지정한 특별한 사유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조국혁신당 비례의원 김재원입니다.

저는 현장 예술인 출신으로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법안을 심사하게 된 것에 참으로 진짜 깊은 감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은 법안이 오래된 것도 많고 그리고 이게 다 민생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얼마나 고심하셔서 안을 만드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무겁게 정말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법안심사에 참여를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감사합니다.

오늘 문체부에서 용호성 차관님하고 관계자 여러분들 나와 계시고요. 수석전문위원님도

법안 검토하시면서 계속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있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 그리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7)
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3)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2)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9)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5)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4)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4)
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1)
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6)
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2)
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
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
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3)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2)
1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2)
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6)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8)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7)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2)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8)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8)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4)

-
- 26. **한류기본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5)
 - 27. **한류산업진흥법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0)
 - 2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6)
 - 2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7)

(14시07분)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의사일정 제27항 한류산업진흥법안은 소위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6항 한류기본법안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심사 자료 1쪽입니다.

종합계획 관련인데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개정안이 현행법 제10조의 공공디자인사업 시행 원칙에 부합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소외계층의 시설·정보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맨 밑의 다만 ‘사회적 약자’ 용어와 관련해서 해당 용어를 별도 예시 없이 포괄적으로 그냥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방식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포함될 수 있는 대표적 대상을 예시로 함께 규정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규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정부 의견이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단서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회적 약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예시로 장애인, 노인을 표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에 관한 것이 선택지로 주어졌는데 사회적 약자라고만 표기된 법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예시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시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이나 또 법안의 취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법안 같은 경우는 그러한 특정한 계층에다가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디자인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 약자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박수현 위원** 지금 정부 측의 의견대로, 처음에 사실은 사회적 약자라고 포괄적으로 들어 있어서 저도 사전에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법안의 조문을 살펴보니 굳이 그렇게 표시하지 않아도 대체적으로 사회적 통념상 사회적 약자 정도로 표시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이기현 의원님 개정안의 취지, 정부 측 의견 전부 다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다른 위원님들 추가 말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안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심사 자료 1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결격사유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미성년자와 같은 결격사유 대상자가 자격 취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마지막 동그라미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격증 발급 시점 직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되도록 하여 조기에 자격 취득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주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조계원 위원** 그러면 미성년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발급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발급 시점 전까지 교육을 이수한 미성년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격증 발급에 관련된 것들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아닙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자격 이수하고 나서 미성년자에서 성년으로 되면 발급이 된다 이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예.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도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데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성년이 되기 직전에는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성년이 되면서 자격을 바로 부여받을 수가 있는데 미성년자니까 교육 대상으로 대학에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성년자가 곧 성년이 될 사람은 교육을 받도록 해서 자격 취득을 쉽도록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그러니까 주로 대학교에서 1학년이나 2학년 중에는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예 교육에서 배제가 돼 버리는데 나중에 자격증하고는 이게 별건으로 교육 자체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격 판단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자의 권리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박수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 의결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현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추가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2건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자료 1쪽에 보시면 증표 제시 관련인데 개정안 주요 내용은 노래연습장 등에서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출입시간 준수 등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 등의 근거를 개별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업주·종사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입장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증표 제시의 근거를 준수사항과 함께 규정하기보다는 법률의 이해 용이성 측면에서 별도의 항으로 신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내용인데 형식적으로는 신성법 의원안처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2024년 12월 27일 새로 도입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해당 부분의 시행일도 이에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수정의견 포함하여 저희와 일치합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수정.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 위원** 수석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추가 검토사항 중에 세 번째,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2024년 12월 27일 새로 도입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해당 부분의 시행일도 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맞추면 지금 신성범 의원안과 김윤덕 의원안에서는 공포 시기가 6개월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예.

○박수현 위원 그들과 어느 것이 빠르게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이 부분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고 그리고 즉시 시행하면 더 빠르게 되는데 이 팔호 안, 5쪽에 보시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팔호의 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하는 이 부분만 시행일을 12월 27일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기현 위원 즉시 시행이지요.

○박수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신성범 의원님 안과 김윤덕 의원님 안 중에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무,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글쎄, 제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업주에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5쪽에 보시면 신성범 의원안은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김윤덕 의원안은 입장은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데 업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재량사항으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책임질 일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성년자가 확실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다 검사하면 좋은데 사실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 보이는 사람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이 법에도 그렇게 맞추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업주들의 책임 문제가 항상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미성년들에게 출입을 허용했을 때 업주들의 책임 문제들이 항상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라면 안 해도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조계원 위원 책임을 경감시키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재원 위원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성인이 아닌 경우에 만일에 잘못 봐서 들여 보냈는데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고지의 표현인 거고 처벌 조항은 별도로 청소년 보호법이나 기타 법률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이기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강제할 필요가 굳이……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 넣지도 않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니까 강제 처벌 규정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너무 닫지 말자는 말씀이 위원님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더 있으신지요?

○조계원 위원 어쨌든 전문위원님 얘기는 신상범 의원안으로 가자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더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공연법은 세 꼭지입니다. 세 개를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의결을 하셔야 되는데 1쪽의 증표 제시 관련해서는 아까 보셨던 증표 제시 근거 명시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입장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측에 보시면 아까 결정하셨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내용이 동일하고요.

다음 5쪽의 두 번째 신분증 위·변조 시 행정처분 면제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청소년 등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업주·종사자 등이 그 나이를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등이 신분증의 위·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 같은 적극적 방법으로 업주 및 종사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까지 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아래 동그라미에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담배사업법 등에는 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검토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지요.

○**조계원 위원** 강유정 의원안은 따로 얘기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예, 뒤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조계원 위원** 지금 의결할 거는 아니고요?

○**소위원장 박정하** 아직, 3개 묶어서 하는 거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예.

○**소위원장 박정하** 수석전문위원님 마저 말씀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10쪽 표준계약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문체부장관이 공연사업자 또는 공연사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우대하는 재정지원의 범위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8조 및 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은 개정안은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제고함으로써

공연예술 창작자의 권리와 출판권을 증진하고 공연예술 분야에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래쪽 네모에 다만 첫 번째, 공연사업자에 표준계약서의 작성·사용을 권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분야와 달리 공연법은 공연자를 정의할 뿐 공연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및 재정지원 우대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업계에서 공연사업자라는 용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연은 창작, 기획, 제작 영역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1쪽 상단에 수정의견으로 안 제1항의 공연사업자를 ‘공연의 창작, 기획, 제작, 유통 등 공연과 관련된 계약을 하려는 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분인 재정지원 모태펀드 관련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9조에 따른 투자는 정부가 모태펀드를 조성한 후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재간접투자 방식으로 수행되어 있고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사업 절차가 아래 표로 흐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검토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박수현 위원** 11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투자를 재정지원 우대 조항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이런 의견인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예, 당초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우대 조항을 강제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모태펀드라는 쪽에다가 투자를 하면 모태펀드에서 다시 자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민간 말하자면 투자 전문가들이 최종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과 같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에 우대를 해 달라는 것을 말하자면 저희가 전제조건으로 넣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이 투자자의 자유로운 어떤 투자 판단을 제약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초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형태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투자조합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아예 강제적으로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투자조합의 성격에 맞춰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초에 조금 신중 검토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원론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권장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원안 그대로 가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수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영비법에도 같은 조

항이 들어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맞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미 있는 조항이니까 만약 이게 위배가 된다면 앞서 있는 조항들을 또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부분도 생기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가 주셔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래서 원래 다른 법률을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저희가 입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더 의견 있으신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심의 중에 강유정 위원님 들어오셨거든요. 첫 회의라 앞서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인사하셨어요. 소감 한번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오늘 하필 운영위랑 같이 열려서 처음부터 못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감사합니다.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방금 보셨던 표준계약서 부분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심사하셨던 부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이 법에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3건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이 법은 두 꼭지인데 첫 번째는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방금 심사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 두 번째, 6쪽입니다. 신기술 활용 콘텐츠 관련인데요. 개정안 주요내용은 신기술 활용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창작·유통·이용 환경 조성 및 연구·개발 촉진 등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메타버스 및 AR·VR 등 각종 신기술의 활용이 콘텐츠산업의 외연 확장 및 산업 고도화 등을 위한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신기술 활용 콘텐츠의 기획·개발 및 제작 등을 정부가 체계적·선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됐다가 법사위 계류 후에 임기 만료가 되어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계·자구가 일부 있는데요, 서지영 의원안에 보면 ‘정부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만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한정될 우려가 있고요. 대통령령 위임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신기술 목록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한정하는 부분이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고동진 의원안에는 현행 9조 1항 콘텐츠에 괄호로 ‘신기술 활용 콘텐츠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별도 항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21대 국회 의결할 때 별도 항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정의견은 뒤쪽의 조문대비표로 보시면 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동진 의원안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기왕에 검토가 완료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제시하십시오.

조 위원님 먼저……

○**조계원 위원** 근본적으로 신기술의 정의에 대한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상에 콘텐츠제작에만 이 신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기술 콘텐츠 개념은 9조 외의 조항에서는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의 정의, 제2조(정의)의 콘텐츠 정의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박정하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 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9조와 관련해서는 9쪽의 조문 자료를 보시면 콘텐츠제작이라고 9조에 제목이 있기는 하지만 1항의 본문을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단 제작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 이용에 관한 부분까지 조항에서는 설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안 나와 있는 것처럼 콘텐츠라는 부분에 팔호가 추가되는 형태만 되더라도 제작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창작·유통·이용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이 그 법안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우리 박 위원님하고 조 위원님, 보시고 말씀 주세요.

○조계원 위원 이 조항에 정의가 지금 빠져 있는데요. 콘텐츠의 정의 규정, 정의 조항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찾아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콘텐츠제작이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 포함적으로 정의 규정에 다 돼 있거든요.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신기술이 그쪽으로 반영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콘텐츠 정의 규정 자체에? 신기술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지금 신기술은 특별히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정의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그런데 특별히 규정을 하지 않아도 이 조항 뒤에 보면 융합형 콘텐츠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융합형 콘텐츠라는 것은 새로운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로 계속 따로따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VR 했을 때.....

○조계원 위원 따로따로 규정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정의에다가 정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조계원 위원 일단은 이 기본적인 기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면 개념을 정의하는 부분에 신기술에 포함시켜서 반영시키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이거든요.

조금 더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강유정 위원 좀 더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지금 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

이 세 건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차관님 조금 설명 주시고 우리 마지막에 다시 한번 논의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예, 그러면 이것은 의결 안하고 좀 더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2건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우선 네 꼭지입니다.

1쪽의 첫 번째는 표준계약서 사용 시에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신설하는 부분으로 심사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6쪽,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에 대한 회계 내역 정기 제공 관련인데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하는 사항에 현행 회계 내역 외에도 제삼자로부터 수령한 보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갈등을 방지하고 정산의 투명성을 담보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통과시켰던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이미 현행법 및 표준계약서 등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개정안과 같은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협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2번 항목은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기본적인 내용에서 검토의견에 이견이 없고요. 협회 측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현행 이러한 현안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 분쟁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제출에 관해서 조금 더 부담을 지우는 것이 향후에 있을 분쟁 과정에서 좀 더 이 사안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이대로 개정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박수현 위원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고지하거나 이런 현행의 다른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있지요, 다른 것 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관련 것들이 원론적으로는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는 약간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부담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수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 측 협회 의견을 좀 정확히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협회 측에서는 이 부분이 본인들의 사업을 운영하는

데 부담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말하자면 정상적인 상황이냐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냐에 관한 부분인데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오히려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 그러니까 지난번에 피프티피프티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련된 정보가 정확하게 투명하게 당사자들 간에 공유가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정부 측에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가 관여가 되는 상황일 경우에 그 자료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사안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그러한 향후의 가능성이 높은 분쟁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쉽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저는 경험을 직접 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초대권 행사다 이런 경우로 해서 그리고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해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많이 당해 본 경우고 해서.

그래서 고지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강제성이 없고 또 지금 여기에도 연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고는 했지만 일단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앞으로는 또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자료제출 의무를 이번에 부과를 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예.

○조계원 위원 거기마다 더해 가지고 회계 내역, 보수를 포함한 회계 내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이게 지금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자 측의 의견을 좀 더 들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무 부과 자체는, 자료 요구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수 내역까지 포함해서 공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재원 위원 예, 그런데 회계 보고라는 것은 어차피 범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세무로도 다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대중문화예술인인 경우에 읊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고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을로서의 그런 위치상의 박탈감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속이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데다가 대중문화예술인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한 형태기 때문에 굳이 대중문화예술인이 그것을 받지 못할, 받지 못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행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한 본인들의 권리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들은 계약관계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동등한 자격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당연히 권리가 있고 그 권리에 응할 의무를 이미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추가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수를 포함한 내역을, 회계 내역 전체를 보고·고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원 위원 예, 지금 개정안이 연 1회 이상 해 달라는.

○조계원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혹여 너무 과한 것으로 비쳐지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소위원장 박정하** 어떻게, 그러면 좀 더 논의를 위해서 계류를 할까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조계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콘텐츠국장 윤양수입니다.

이 법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승기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승기 씨가 장기간 거의 급여나 보수를 못 받은 그게 엄청나게 사회적 파급효과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약간 이승기법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이고요.

이게 기획자하고 대중예술인들이 갑을관계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대중문화 쪽에서.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기획사 측에서는 반대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우리 대중예술인 보호라든지 그쪽 측면에서는 법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적자치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법률이라든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대원칙이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게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적자치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승기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사건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예술인들이 아무래도 기획사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약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자료를 자유롭게 요청을 한다든가 대등한 계약관계의 이행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피해가 굉장히 나오고 있고, 사실 드러나지 않은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부 기획사에서 약간의 우려는 표시하고 있지만 예술인들 대부분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갈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동안 언론이라든가 이런데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론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좀 지연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강제조항이 추가된 거지 않습니까? ‘내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여기까지 이미 새로 추가해서 강제조항을 추가했고요. 여기에다 또 더해 가지고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1회 이상’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강제규정에 단서 조항까지 포함해서 더 추가가 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사적자치의 원칙에 너무 반하지 않나.

○**정연숙 위원** 말씀하신 취지도 저도 공감하지만 우리가 이승기법이나 이런 사안 자체는 연예인들의, 대중예술인 자체가 갖는 사회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계약관계에서는 항상 좀 밀릴 수밖에 없고, 을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고 그 계약 내용 자체도 아마 거의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게 엄연한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치의 영역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주 을의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 정도는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96년 말부터 활동한 제가 97년 당시

에 이러한 것들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이중계약에 의한 피해가 20억이 넘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그런데 지금 삼십여 년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요구를 하면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이, 하도록 강제 규정이 지금 포함된 거거든요?

○김재원 위원 예.

○조계원 위원 강제 적용 규정이 포함됐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요구가 없더라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자료를 보수 포함해서 고지케 하는 거거든요.

○김재원 위원 보통은 요구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김재원 위원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일이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는 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책무가 주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특히 기업이기 때문에 자치의 영역에서의 일정한 제약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계약 당사자인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을을 보호하는 차원의 법률이라면 저는 이 정도는 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수현 위원 제가 수정의견을 좀 내 보면 조계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 앞에 이미 ‘제공하여야 하며’라고 하는 그 의무가 부과가 돼 있고 그것에 추가해서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강한 압박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김재원 위원님께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여쭈어보면, 의견을 물어보면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이렇게 한다면 그 의미가 크게 무슨 차이가 생기나요?

○김재원 위원 연 1회라는 규정이 없다면 3년에 한 번 줘도 되고 5년에 한 번 줘도 되고 ‘되는 대로 줄게’ 이럴 수도 있고.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대통령령에 따라’니까 대통령령에서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부분 법에 이렇게 담지 않더라도, 그런 취지를 담아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본 거거든요.

○김재원 위원 대통령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계원 위원 대통령령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그것은 없고요. 대통령령에서 자세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라면 법에서는 연 1회 이상이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덜어내는 대신에 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어차피 이에 따라서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통령령에다가 이러한 부분들을 업계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가지고 연 1회라든가 혹은 조금 완화된 형태로 포함시키는 형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법령에선 제외하고 대령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박수현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합의가 될 수 있다면 양쪽의 균형을 잘 잡아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을의 입장을 더 보호하는 측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조 위원님, 이 정도면……

그러면 이것도 의결하지 말고 수정 문안을 좀 만들어 갖고 이따 말미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아니, 방금 의견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를 빼고 가자고 말씀을 하셔서……

○**소위원장 박정하** 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예, 이 부분은 정리가 됐고, 아직 꼭지가 2개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4번은 체계·자구라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 3번 불공정행위 관련인데요.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을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조사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입니다.

현행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부득이하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아울러 이것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용이고요. 다만 이 부분도 협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사에 대해서 비협조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쟁점이 없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면 13쪽의 과태료 관련 사항인데요. 현행 41조 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른쪽 동그라미에 보시면 성교육,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 원 과태료인데 이 부과권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완하는 단순 체계·자구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검토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아까 전 우리 논의한 대로 자구 수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2건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1쪽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 국가는 세종학당재단의 예산 및 인력 확대와 콘텐츠·홍보 확대를 통한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통해서 세종학당재단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어·한국문화 및 인지도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국어 정책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은 ‘국어의 발전이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사업 목적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가가 특정 민간 재단에 대한 예산 및 인력 확대,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입법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규정할지 또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외국어 또는 제2외국어로서의 국어 보급’, 이게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검토의견에 대체로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후반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을 세종학당재단이라고 하는 특정한 조직의 예산 등을 위해 노력한다고 문구를 표기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위해 예산 및 인력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울러서 이 부분이 만약 이렇게 규정이 될 경우에는 지금 19조의2에는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것들을 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19조의1로 조항을 옮겨서 19조의 1의 1항 정도로 이것을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조의1은 국어의 보급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항을 그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 조문 자체를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자는 건가요? 수정 제안하자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것을 2가 아니고 19조의1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저도 특정 재단을 향해서 이렇게 입법례를 하는 것은 약간 법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취지로 애초의 설립 취지에 맞게 표현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

○**이기현 위원** 문체부에서 이번에 세종학당 혁신안 이런 것 발표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지난주에 제가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세종학당이 지금 현재 256개가 있는데 300개까지 단기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물론 물리적인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온라인을 통한 AI 한국어 선생님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개선책이 나와 있는데 법령상에 이렇게 규정을 넣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이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 위원님하고 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이나 정부 측은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당초의 입법 취지 자체가, 세종학당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굉장히 각광받아 왔고 첫해에 그게 700명 정도로 시작됐던 인원이 지금 30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14년 동안. 그래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든가 자원 배분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 어떻게, 이게 무리하지 않은 범위라면 아까 말씀 주신 것에 수긍을 하시는지요.

○조계원 위원 19조의1로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 주신 걸로……

○정연욱 위원 그런 식으로, 수정 대안으로 반영하는 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수현 위원 저도 지금 정부 측이나 말씀하신 대로 이 개정안의 실의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리해 주신 대로 그런 정도로 수정 대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하게 개정안의 입법 취지도 반영이 되면서 합리적인 수정 대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이기현 위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충분한 토론 다 되신 거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자료 1쪽에 문화산업보증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를 완성 외에 제작·유통 등 단계까지 확대하여 명칭을 문화산업보증 제도로 변경하고 보증기관으로 현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외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며 보증계정에 대한 정부의 출연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프로젝트의 기획·제작·유통은 물론 해외 수출 등을 포함한 각 단계 전반에 있어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도모하고 보증 대상의 확대를 통해 영세한 콘텐츠기업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른 완성보증은 기획, 개발 등 초기 단계 및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해외로 진출하는 등의 단계에서는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 규모를 크게 늘리게 되면 보증계정의 안정적 운용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나아가 정책금융의 무리한 양적 확대 가능성 지적도 있습니다.

체계·자구 측면에서는 개정안은 보증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보증계정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의 문구가 보증계정의 운영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필요한 자금을 보증계정에 출연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문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을 말한다’고 있는 부분은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대비표로 있습니다. 5쪽인데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빼고 5쪽 보시면 가운데 2항에 ‘계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렇게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의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행 기본법 제2조 13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해서 1회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상황이었는데 같은 조 같은 호 개정안은 이렇게 돼 있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돼 있고 여기에 더해서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을 말한다’라고 해서 보면 이중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규정의 명확성이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말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중성을 제거하고 다듬는 방법은 없는지 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는 전부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추가 예산의 소요 규모나 법 통과 시에 대표적인 수혜 기업들은 어떤 곳이 있는지 또 예산 확대에 있어서 기재부나 관계기관 등과 협의된 것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콘텐츠국장 윤양수입니다.

그동안 보증이 완성보증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품이나 영화를 다 찍거나 상품을 만들거나 이럴 때 완성하는 것만 사실은 보증을 해 줬는데요. 보증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연 한 200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 주는 차원이고요.

콘텐츠는 기획이 중요하거든요. 기획·연구개발·수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지금 그런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콘텐츠 수출이 124억 달러 정도, 엄청나게 늘었고 또 콘텐츠 특성이 기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완성한 것만 보증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연구개발·유통·수출까지 지원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확대시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사실은 이 금액이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우리가 200억 정도 출연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융자나 투자를 해 주는 그런 콘셉트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아까 수석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연체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조금 높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높진 않습니다.

이것 수혜받는 데는 대부분 콘텐츠기업이거든요. 대부분 콘텐츠기업들이 왜 완성보증만 해 주냐, 다른 것도 보증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업계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완성보증을 전체 문화산업보증으로 확대하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부분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그다음에 추가되는 게 수출보험공사거든요. 그런 데서 노하우가 있고 수십 년간 잘해 온 기관이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위원** 그 앞에 제가 질문한 부분, 지금 개정안에 보면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그리고 같은 호의 뒤에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을 말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이라는 게 두 번이 중복해서 들어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이것도 후반부에 있는 대통령령은 생략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박수현 위원** 문제가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그래서 대체 의견에 뒤의 ‘대통령령으로’는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수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수현 위원** 못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예,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리고 앞에 예산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완성보증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작·유통 전반으로 확대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제도가 개편된 다음에 아마도 콘텐츠기업 쪽으로부터 수요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저희 정부 안에서, 특히 문체부의 입장에서는 관련 업계들이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좀 넓혀 주고 그에 맞춰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면 그 수요에 맞춰 가지고 관련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저희가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다 토론됐나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4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4개 꼭지가 있는데 게임장 출입자 대상 증표 제시 요구 근거 신설과 두 번째,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시 행정처분 면제는 이미 우리가 심사했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14쪽의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 게임사업자 관련해서 개정안은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대리업무의 범위는 개정안은 첫째 사행성 관련 준수, 두 번째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세 번째 표시의무 이행(확률형 아이템 포함), 네 번째 광고·선전 제한 규정 준수입니다. 그리고 제재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입니다.

해외 게임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대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다만 국내대리인이 해외사업자를 대리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 및 대리인 미지정 시 제재 수단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대리업무의 범위는 1번, 4번같이 능동적 행위가 필요한 작위의무가 아니라서 이 부분 1번과 4번은 대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리상으로 대리가 어렵다는, 부작위의무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제재 수단과 관련해서는 맨 하단에 형사처벌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될 것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과태료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번 항목은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3번 항목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강유정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1000만 원 과태료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낙에 이익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정도로 수익 대비 과태료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원안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일종의 정벌 규정을 좀 강화함으로써 이번에 이런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서 사태들을 조금 막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다만 지금 관련된 그 법령 유사한 부분들, 국내대리인에 관련된 유사 입법례를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국내대리인이 미지정되었을 경우에 과태료로 동일하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것만 따로 벌금으로 하는 것이 조금 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전문위원실 의견처럼 지금 이 부분에 관련돼서 형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해외 쪽에서 과연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겠느냐라는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이번에 저희가 이 규제 관련된 조항이 도입되는 것이니만큼 2000만 원 과태료 정도로 일단 규정하고 만약에 이 조항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추후에 저희가 이 부분을 과태료 금액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형별 조항으로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하시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면 다른 법하고, 입법례처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약간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예, 균형을 일단은 맞추는 게 어떨까요라는 의견입니다.

○**강유정 위원** 여기는 1000만 원으로 수정안이 되어 있길래.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그것은 초안이었고 이쪽에 2000만 원 이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 초안이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예, 2000만 원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다른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과 동일하게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강 위원님, 충분히 그러면……

○**강유정 위원** 예.

○**김재원 위원** 한 가지 우려는 이렇게 할 경우에 국내 사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우회해서 접속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의 실효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차라리 국내 망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내는 방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그런데 저희가 이런 종류의 산업에 대응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말하자면 다른 형태의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서 법을 우회하는 경우가 늘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드는 부분들이 늘 필요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들 유념해서 저희가 추후 필요할 경우에 별도로 입법안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4번 항 더 하셔야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예, 22쪽 4번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인데요.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게임물 사업자로 전환하고,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하며, 세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네 번째 문체부장관이 신고 및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규제 도입 6개월 시점에서 추가 규제 도입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성급한 규제 도입, 차별적 적용 등 문제로 인해 법적·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규제의 실제 효과와 부작용의 면밀한 분석 조정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입증책임 전환은 민사소송상의 대원칙에 대하여 예외에 해당하여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요.

23쪽의 두 번째, 손해액 입증부담 완화 또한 그 손해액을 산정하고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 민사법상 원칙인 전보적 손해배상의 예외로서 범죄 수익을 국가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윤호성** 전문위원실 의견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고요. 다만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체로 동의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그동안에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 20년 가까이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위낙 커기 때문에 게임이용자들로부터 굉장히 큰 반발을 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그동안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많이 만들어 왔고 게임업계와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로서 이루어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만 이것이 고의적으로 기망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라면 이러한 어쨌든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 낸 부분들이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예외적인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조항들은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업계의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이미 게임업계가 다 동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도 현실적으로 공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 이와 관련된 판례가 하나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업계가 보상해야 되는 부분도 게임을 구매했던, 아이템을 구매했던 금액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의 5% 정도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게임업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형태의 징벌적 배상이 주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게임 전반적인 생태계의 조금 더 큰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도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강유정 위원** 그런데 그 입증책임을 할 때 법원에 따라서 재량이 너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상당히 이해도가 높은 법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게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아직 제가 알기로는 판사님들이나 법원에서 이런 확률형 게임 아이템 같은 것들이 인지가 잘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위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저희도 그 부분을 고려해 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부분들을 전부를 다 입법에, 법률안에 담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난해 이미 판결이 한 번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의 유사한 판결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판례들이 축적이 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우려는 조금씩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세세한 규정을 담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다른 위원님들은……

○조계원 위원 이 입증책임 전환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손해배상청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고의·과실에 의해서 이 기망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가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게임사에서 우리가 고의·과실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역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개념인 건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게임회사에서 어떤 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그 내부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입증하라라고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소송 과정에서 승소 가능성성이 거의 없는 이슈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한 부분들은 게임회사에다가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게 되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입증책임이 일반적인 법리대로 청구권자에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조사도 해야 되고 번거로운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입증책임이 전환이 되어서, 게임업체 측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 측에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쉽게 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확률형 아이템의,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본인이 손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그 본인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면 또 입증책임을, 입증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그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검토의견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확률형 아이템이 22쪽에 나와 있는, 법체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만한 특수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당하면 이 제도를 도입하고 논의하셔서 해당되지 않으면 판단하셔라……

○조계원 위원 하여튼 입증 전환이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자 그런 의견인가요, 그러면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지난해에 넥슨이라는 게임사에서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을 발매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유사한 형태의 이슈를 가지고 소비자보호원에 5000명 정도가 집단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게 한 11억 정도, 총액으로 11억 정도를 보상하는 걸로 결론이 나온 적이 있고 그 이후에 법적 쟁송이 일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저희가 게임업계를 어느 정도 두둔해 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굉장히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고통을 받아 왔고, 말하자면 이것으로 인해서 게임산업이 스스로의 성장을 옮아매고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해서 이 사업을 운영해 왔던 부분들의 생태계가 조금씩 바뀌어 가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법률로써도 그런 부분을 뒷받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게임회사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저희 이 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른 법안에서들도 그런 문제들이 또 제기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급적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을 규제하는 형태의 법안이 도입이 되는 것이 게임업계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게 맞기는 한데요.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는 언제나 좀 무거운 배상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엄밀히 말해서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게임회사들이 배상을 해야 될 확률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 급성장한 이유는 사실상 게임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 커 버린 건데, 그래서 이게 게임업계 자체를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이런 부분을 규명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서 이를 말 그대로 게임사들의 어떤 재산 상태에 따라서 일종의 손해배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게임만으로 기업이 또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제가 알기로도, 넷마블 같은 경우도 코웨이 지분이 25%잖아요. 이제 이런식으로 병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를 바로 통과시켜서 간단기보다 징벌적 손해배상만이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가면 어떨까라는 의견은 조금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게임 개발업체가 대기업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강유정 위원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소송이 남발이 될 경우, 거의 소송 하나 걸리면 거기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투자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징벌적 손해배상 까지 가중이 되면 자칫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좀 듭니다.

○정연욱 위원 근본적으로 보면 게임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만 그동안 피해 당사자들의 피해구제대책이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는 부분도……

이게 지금 양쪽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요. 다만 그동안에는 항상 피해 부분에 대한 구제대책이나 구제방안이 제대로 실행되지는 못했다는 측면이 우선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징벌적 배상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법안 취지 전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지 자체는 전부 다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으니까 배상 문제를 어떤 식으로 조율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수석전문위원이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소위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가 금년도 3월 22일 날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협회에서 의견은 확률 정보 공개제도가 최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이용자 보호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면 그때 검토하자 이런 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지금까지 진행됐던 여러 가지 피해 사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지 않아야 되나, 게임업체도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수석님, 그거 관련해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3월 이후,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 소송이 막 늘어나거나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그런 건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국장 윤양수입니다.

3월부터 시행해서 우리가 신고받은 게 한 700건 정도 되고요. 아까 입증책임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확률 정보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다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카지노 확률의 그런 거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소비자들이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확률 정보를 원래 표시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것도 만약에 10% 확률을 주겠다—아이템을 획득하는 데—그러면 10%를 줘야 되는데 이거 1%를 주는지 0.5% 주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용자들의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그래서 입증책임 문제는 개인 소비자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버도 접근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입증책임 전환을, 여기다 지운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소게임사가 조금 피해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 하셨는데 이런 확률형 아이템을 조작하거나 시행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소 조그만 기업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그동안 너무 문제가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용자 시위가 소위 마차시위까지 일어났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거를 그동안 수익을 굉장히 많이 창출을 했거든요, 게임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금 제재를 하는 거지 그게 대단한 위협이 되거나 엄청나게 손해를 가하거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게임회사들도 어느 정도 크게 이의 제기는 안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 문체부에.

○**강유정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취지는 동의하고 방향도 동의합니다만 확

룰형 아이템 규제 자체가 3월이고 겨우 지금 8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 가보자는 거지 법안 자체에 반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정별적 손해배상, 제가 알고 있기는 중소게임사가 훨씬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암의 범위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모든 제재를 하는 법률안을 넣을 때에는 진작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조금 조심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위원님들도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이거는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조금 조정의견을 드리자면요.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징적 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게임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3월 달에 법 시행이 됐지만 제재 조항이 전혀 없는 부분 때문에 사실 또 우려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소비자 쪽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인 조항은 유지를 하되 말씀하신 정별적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만 내용을 좀 완화를 해서, 지금 3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라는 형태로, 지금은 ‘금액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2배까지 정별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2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정별적이라는 상징적인 효과는 조금 완화를 하면서 저희가 추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조계원 위원 고의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확히 처벌을 해야지요. 오히려 손해액을 더 크게 해도 문제는 없지요.

○양문석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도 이렇게 소비자를 사기 치는 놈들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끼려야지……

○강유정 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아직…… 맞습니다,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그렇게 악의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규모 같은 것들이 제가 알기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된 바가 없다고 알고 있어서……

○조계원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입증책임의 문제를…… 거기에 오히려 중재안을 넣을 수는 없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다 부과해 버리고 제기할 수 있게 해 버리면 너무 소송이 남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판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필요한 경우 재판관이 입증책임을 줄 수 있게끔, 그건 법률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김재원 위원 이게 게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들이 그 안에서 확률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걸 수시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소비자가 그거를 입증하거나 재판관님이 이거를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5000명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략 어느 정도의 돈을 쓰면 이 아이템, 저 아이템, 저 아이템 중에……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 사안의 경우에는 재판관이 당연히 입증책임을 게임 개발업체에다가 부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 사소한 것들로 이를테면 소송이 남발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까지 전부 입증책임을 법적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그야말로 골탕 먹이고 적당히 합의 봐서 돈 받고 빠져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재판관이 소 제기 사항을 검토하고 입증책임을 네가 해 와라, 네가 해 와라 이거 좀 가르마를 탈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을 만들 수는 없나 이거지요.

○**김재원 위원** 일단 이게 확률형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관……

○**박수현 위원** 대체로 이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보면 게임업계에서는 반대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찬성을 할 텐데 아까 정부 측 이야기를 들어 보니 업계 측에서는 지금 이 개정안의 내용을 대체로 수용하는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 취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수현 위원** 아니, 사회적 합의보다도 그 전에 이 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이 조항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는, 고의나 이런 형태로 해서 위반행위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어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제재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법으로 구체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조계원 위원** 업계 입장에서야 당연히 반대지요.

○**박수현 위원** 지금 정부 측에서는 그렇다면 현재 전부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정부 측 입장은 정하기 위해서 업계와 소비자 측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다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업계 쪽에서는 저희 쪽으로 공식적으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게임산업협회 쪽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라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과 유사한 형태의 의견들이 들어왔고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굉장히 수년간에 걸쳐서 누적이 되어 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가지고 국민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직접 조사를 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 악의적·고의적이라는 표현은 아예 사기 치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조계원 위원** 아니, 그게 핵심은 아니지……

○**양문석 위원** 아니, 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는 언론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사기 치는 놈들, 거짓말하는 놈들은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잖아요. 왜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해?

○**조계원 위원** 그거 때려잡아야지……

○**양문석 위원** 악의적인·고의적인 부분이 드러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해서 서너 배씩 공정거래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이상으로 때려잡아야지, 그거는 작은 놈이든 큰 놈이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입장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소비자가 중심이지, 나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박수현 위원 입장이 뭔지 몰라 가지고 내가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야……

○**박수현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로 이 개정안의 취지에 다 공감하고 있는 거지요?

○**강유정 위원** 맞아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조계원 위원** 취지에 반감 있는 게 아니고……

○**박수현 위원** 있는데 지금 정연숙 위원님께서 의견을 대체토론 요지를 내셨지만 3월 달에 법이 시행이 된 뒤에다 과도한 측면이 없는지도 한번 균형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도 우리가 지금 오시는 중에 짧게 살펴보고 있던 중입니다. 그게 제 취지입니다.

○**양문석 위원** 소비자들이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정하** 워낙 피해가 커요.

○**양문석 위원** 피해도 크고 분노도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때려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수현 위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아까 법률안 하나 뒤로 회의 말미로 넘어갔잖아요. 이것도 의결 지금 하지 말고 민주당 위원님들 한 번 더 논의하시고 난 다음에 이따가 말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우리 심의 중에 들어오셨는데 저희 다 돌아가면서 인사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볍게……

○**양문석 위원** 안녕하세요.

○**소위원장 박정하** 환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1항부터 25항까지 5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네 꼭지가 있는데 첫 번째 증표 제시 요구 근거 신설하는 부분과 두 번째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시 행정처분 면제는 이미 심사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과금 관련해서 15쪽입니다.

영화 입장권 부과금 관련인데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입장권 가액의 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첫 번째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안과 두 번째 입장권 가액의 3% 이상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하는 안, 세 번째 폐지하자는 안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1의 찬성·반대의견을 참고해서 아래 사항 등을 기준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영화부과금이 관람객들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있고 이를 폐지하는 것이 국민의 민생 부담 완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두 번째 영화산업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대하여 영화관람객에게 집단적 책임성 및 효용성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영화부과금이 없이도 영화발전기금의 조성 및 효과적 운영 등이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한 말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지금 부과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동안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된 논점들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과금이라는 부분이 그림자 조세라고 통칭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세금을 내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일반적인 소비활동 안에 일부 금액이 부과금이라는 형태로 징수가 되어 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그동안에 시행해 왔던 부과금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관련된 부분들을 관련 법 개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있었었고, 특히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들은 2008년에 있었던 헌법소원 부분입니다. 2008년에 영화부과금에 관련된 헌법소원이 있었고 그 당시에 합헌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합헌결정이 된 이유가 5 대 4로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6표가 나와야 합헌이 안 되는 부분인데 5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합헌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뒤집어 말하자면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5 대 4로 이 부분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주된 논리는 국민들의, 관람객이 자기가 의사결정하지 않은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부분이 기본권이 침해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 영화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할 수 있으나 관람객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헌법재판소에서 5 대 4로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헌법재판소의 절차적인 부분에서 6표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합헌결정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는 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람객에게 부당한 책임을 부과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폐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 부담금을 없앨 경우에 영화진흥기금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화산업 진흥을 정부가 제대로 못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두 가지 의견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영화진흥기금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2019년까지 대략 연간 500억 정도 금액이 징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에 이게 100억대로 떨어졌고요. 이후에 다른 산업 대부분이 복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진흥기금은 대략 반토막이 나서 250억 정도만 현재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단순히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영화관이라는 곳에서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이 이미 저희 트렌드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앞으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관람하는 형태가 이미 많이 바뀌었고, 특히 OTT라는 것의 어떤 효용성 같은 것들을 소비자가 인지를 하면서 굳이 내가 시간 내서 1만 5000원 내고 와서 영화를 보기보다 1만 5000원 내고 나는 집에서 한 달 동안에 수백 편 영화를 보겠다라는 의사결정을 이미 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영화관의 관람객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증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과금이 그대로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영화기금 조성에는 상당한 정도의 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정부가 영화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소홀히 할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의 예산 부분에 관한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저께 강유정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돼서 몇 번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이유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 때 의결이 됐기 때문에 기재부랑 협의를 거쳐서 이제 오후부터는 저희가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024년도에 영화산업 관련 진흥 예산은 736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정부예산안에 828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대략 한 12%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이어서 정부 전체 예산안의 증가분이라든가 저희 문체부의 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예산이 영화산업 쪽에 지금 배정이 현재 정부안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영화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담금은 이번에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문석 위원** 부담금을 폐지하는 이유가 헌법불합치에 대해서 헌법정신에 따라서 재조정하자는 의도지요?

○**이기현 위원** 아니요, 정반대.

○**조계원 위원** 아니요, 헌법은 합헌…… 5 대 4로 합헌이 됐어요.

○**양문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게 어중간하게 합헌이 됐잖아, 저쪽에서. 그래서 지금 저쪽 진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 이전에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내가 이 돈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갖다가……

○**양문석 위원** 잠깐잠깐, 그래서 질문할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림자 조세라고 표현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양문석 위원** 그런데 그림자 조세가 영화에만 있나요?

○**소위원장 박정하** 양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속기사님 속기록 하고 계시는데요……

○**양문석 위원** 지금 이거 공식 회의예요? 말을 해 주지.

○**소위원장 박정하** 그래서 마이크 이렇게 쓰시고 말씀 주십시오……

○**양문석 위원** 말은 해도 된다 이거지요?

○소위원장 박정하 예.

○양문석 위원 아니, 그래서 그림자 조세라고 칩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런데 이게 영화에만 있느냐고.

아까 그걸 기본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나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수없이 많은 조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문화진흥과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인 장르인 영화에 일차적으로 문화부가 먼저 손을 대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림자 조세가 수없이 많은데 왜? 그렇지 않아도 사양화되어 가고 있고 힘들어하는 영화 문제의 그림자 조세부터 지워야 된다고 하는지, 그래서 자꾸 그 의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다음에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영화인들로부터 튀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어, 수없이 많은 기본권을. 그런데 아주 적은 500원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부르르 분노에 떠는 사람은 없어.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그런 것들은 부르르 직접적인 분노에 처하지만 영화진흥을 하자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하자라고 하는 쪽이 많고 그리고 특히 협업인 영화인들이 열악한 영화 제작 환경 속에서 벼텨 가고 있는 그분들의 공익적 성격을 이해를 한다면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강유정 위원 죄송한데 제가 조금 이따 질의 때문에 내려가야 돼서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 현법소월 기각 사유를 보자면 ‘영화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는 이 발전기금 지출 용도가 기금 집행의 궁극적인 이익이 결국 관람객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이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이를테면 한국 영화계가 노후 대비를 좀 잘못해 놓은 거예요. 이게 영화발전기금이 아주 두둑하게 우리 영화의 전성기를 지나면서 혹시나 올 위기에 대해서도 잘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저도 양 위원님 말씀과 동의하는 게 뭐냐면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영화계가 힘들다는 걸 차관님도 동의하시면서 이 와중에 부과되고 있던 발전기금마저도 대통령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없애겠다라고 쉽게 말한다라는 게……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 두고 이렇게 발전기금을 충당하고 혹은 더 많은 발전기금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라고 계획을 먼저 말씀하셨으면 불안이나 불만이 별로 없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순서도 잘못되었고, 그런 점에서 이게 법적인 차원으로 올려서 보호하자고 한 건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냥 마음먹기에 따라서 쉽게 없앨 수 없는 기금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지금 법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부과금 때문에 영화를 못 보겠다, 부과금 때문에 영화관을 못 가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신 관객분들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대안이 없다……

○양문석 위원 제1차관은 부과금 때문에 영화관 가기 싫으신 모양이에요.

○소위원장 박정하 속기사님, 이 부분은 적지 마시고요. 제가 그, 농담한 표현……

○양문석 위원 저분은 내가 뭐 말만 하면 농담, 시비를 거세요?

○소위원장 박정하 우리 양 위원님, 꼭 발언권 얻어서 말씀 주세요.

양 위원 말씀 주세요.

지금 그거 다예요?

○양문석 위원 다 했어요.

○조계원 위원 잠깐만……

○소위원장 박정하 말씀하세요.

○조계원 위원 용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어요. 관객들이 전혀 영화 그 부담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고 부담한다는 사실 자체도 못 느끼고 있고요. 그런 돈을 왜 굳이 없애려 하는가. 이 영화발전기금이 그나마 지금 한류,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독립영화나 이런 제작을 위해서 조금 지원되고 있지요? 그 발전의 짹을 아예 그냥 없애 버리려는 의사가 아닌가. 물론 이번 예산편성은 828억으로 많이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얼마든지 또 삭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색내기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OTT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OTT는 우리나라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나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잠식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 시장에 맞서서 그나마 한국인의 독창적인 영화 콘텐츠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배양해도 부족할 판에 그것들로 사람들이 쏠려 나가고 있으니까, 쏠려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홀히 해도 된다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영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영화발전기금을 3%, 5% 이 정도의 금액보다도 더 활성화하고 더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내도 부족할 판에 거꾸로 역행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연욱 위원 저도 근본적인 영화산업 자체를 누가 뭐 이렇게 막고 제동을 걸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화산업이라는 콘텐츠 전체를 놓고 볼 때 과연 꼭 영화관에 있는 문제로 다 국한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영화관에 가는 상징적인 하나의 그런 기금이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정부 쪽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코로나 시기 이후에 지금 이 발전기금에 모이는 부과금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고 그리고 이미 영화 콘텐츠라는 것 자체가 갖는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것도 시대 추세라는 건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과금 문제는 정부 쪽에서는 아마 그림자 조세나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것 저는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로 볼 때 영상 콘텐츠를 보는 시청 태도 자체가 스타일이 확 바뀌는 추세에서 과연 영화관의 부과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꼭 이게 하나의 영상산업의 무슨 발전을 막는다 이런 취지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과금 자체는, 물론 영상산업 자체를 발전시켜야 되는 큰 대의는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과연 꼭 발전기부금이라는 문제를 부과금만 가지고 볼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 예산이, 맞습니다. 올해 바뀔 수도 있고 내년에 바뀔 수도 있다지만 이런 부분은 하나의 정책 의지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게 또 줄어들면, 아시겠지만 R&D 예산 하나 가지고도 막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부나 영상 발전의, 영화인들의 K-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어느 누가 제동을 걸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 부과금 문제는 다른 부과금 문제가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추세라는 것도 있고 그런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부과금만 가지고 그러면 과연 영상 전체를 키워할 수 있겠느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계속 영상 관람객이 줄어들어 버리면 어떻게 다 그걸 감당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한다면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유정 위원** 지금 영화라는 것 자체가 스크린에 걸리는 걸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비법에? 그렇다면 영화 규정에 대한 또 다른 법적인 미비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스크린 영화의 위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탄력적으로 적응해 가는 법적인 입법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그림자 조세이기도 하지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선택하는 분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400원, 500원이 그냥 영화를 안 보는 사람들이 마치 시청료처럼, 보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영화를 향유하는 계층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동의가 있는 그림자 조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영화산업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고 보완해 가는 거지……

이건 상징성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돈이 액수가 얼마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게 지금 영화발전기금으로 가서 영화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한꺼번에 잘라 버렸을 때 얼마 안 되는, R&D에 비해서 예산 얼마 안 될 거예요. 정말 안 되는 예산이지만 영화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 상징성 자체가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정부로서도 이 상징성을 버리면서까지 과도하게, 극장 가는 사람들에게 400원, 450원 덜 받는 이런 부분이 그다지 큰 혜택이 되지 않고.

얼마 전에 최민식 씨 말 때문에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영화 풋값을 내려야 된다고 했을 때 400원 내려 달라는 말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감세 효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영화진흥에 굉장히 위해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 효과가 훨씬 더 큰 상태인데 저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건 오히려 조금 더 보존되는 측면, 최소 보존되는 측면으로 가야지 없애는 건 굉장히 그 영향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조금 몇 가지 보충 답변드리면 500원이라는 문제가 영화 관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게 경제적 부담에서 정말 큰 부담이라서 그걸 덜어 드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소비자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세금을 부과받는다라는 부분의…… 그러니까 부과금이라고 하는, 부담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 자체가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별 부담 안 되니까 그냥 뭐 내면 어때라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전체 부담금 32개 중에서 18개를 폐지하고 한 14개 정도는 감면을 하는, 이번에 아마 관광기금 쪽도 감면으로 결론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폐지하거나 거의 부담이 안 되는 수준으로 줄이는 형태로 대폭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 예산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고 기재부에 안을 제출

하고 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부담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이 얼마가 있든 간에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은 또 전혀 다른 논리가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부담금을 통해 기금 조성이 250억이 되면 기재부에서는 250억은 기금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니까 그건 빼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 1000억이 필요하다라면 750억만 국고로 편성하자. 말하자면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는 단계에 가서는 영화진흥기금이 부담금으로 조성이 되건 또 다른 재원으로 조성이 되건 최종적인 결론에 관한 부분들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실례로서 문예진흥기금이 2000년대 초반에 역시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폐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영화관에도 일부 부담이 된 적이 있었고 고궁 입장료에 부담이 됐었는데 이게 폐지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예술계에서 ‘야, 문예진흥기금이 폐지가 되면 앞으로 정부에서 예술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냐’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보다도 문예진흥기금 예산이 2배, 3배 이상으로 계속 늘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라든가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들은 기금이 얼마, 그러니까 부담금을 통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논리로 진행이 돼 왔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전체 예산의 증가율이나 문체부 예산의 증가율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2025년 예산안이 정부안으로 12%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영화 분야가 828억 안이 만들어졌고—아마 곧 위원님들께도 제출이 될 것입니다만—그런 정부의 의지가 이미 드러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영화계에서의 우려에 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계원 위원 설득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지금 영화계에서 엄청나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께서 잘 정리를 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문체부도 지난 2021년에 영화부과금의 징수 기한을 종전의 2021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률을 심사할 당시에는 ‘영화부과금의 징수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영화발전 기금이 근 시일 내에 고갈되어 영화산업 진흥 및 지원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다’, 오히려 문체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리고 ‘영화부과금을 폐지할 경우 영화발전기금의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던 부담금 등의 재원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 결국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후의 기금 수입을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불확실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그냥 올렸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형태로 해서 과연 영화계에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영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 자체가, 영화산업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K-콘텐츠의 핵심 장르로 영화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계속해서 K-콘텐츠, K-콘텐츠 하는데 지금 결국에는 저작권이나 OTT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외국에 다 뺏기고 있잖아요. 외국 게 돼 가고 있잖아요. 외국 것 만들어 주는 셈이에요, 우리는 그냥 허드렛일하고. 그런데 영화산업도 그렇게 위축시켜 버리면 결국 문체부에서도 그렇게 강조하는 K-콘텐츠 경쟁력 전반을 약화시키는 그런 우려가

들고요.

앞서도 용 차관님께서 계속해서 강조를,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강조했지만 영화발전기금 500원 이 부분은 실제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못 느끼고 있다. 물론 향유자이면서 영화발전에 기여하는 기금인지 모르면서 지금 내고 있는데 왜 그 부분을 굳이 그림자 조세로 들춰내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폐지를 하려고 하는가.

문제 제기 자체가 영화관람객들의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조사나 리서치된 결과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영화관람객을 저희가 직접 조사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론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알게 모르게 내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부분들에 관한 원론적인 불합리함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2008년에 판결을 했어요. 그때는 이명박 정부 때 판결인데 그때 보면 ‘영화관람객은 영화라는 단일 장르의 예술의 향유자로서 집단적 동질성이 있고 영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객관적 근접성이 있으며 영화발전기금의 지출용도는 영화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그 기금의 집행을 통한 궁극적인 이익은 영화산업의 소비자인 관람객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집단적 책임성과 효용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게 5 대 4로 합헌결정이 됐다고 해서, 5 대 4건 6 대 3이건 법률의 최종적인 헌법 합치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5 대 4는 어떻고 이런 근거를 대는 건 저는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수현 위원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저도 똑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감사하고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 부담금의 폐지가 민생 정책으로 시작했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정부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언제부터 우리 국가가, 정부가 그렇게 국민에게 민생에게 친절해서 나도 모르게 내는 500원의 영화부담금까지 찾아내 가지고 이걸 없애 주면 민생에 도움이 된다는 그렇게 과도한 친절을 왜 베풀려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 측의 논리가 5 대 4 합헌판정은 내렸지만 반대 4가 있었다라는 그런 논리까지 끌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뭐 하러 그렇게 까지 무리하게 설득을 합니까?

그리고 정부가 영화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입, 관람객 수의 감소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코로나라는 상황이 와서 영화관람객 수가 감소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을 더 해서 영화산업이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줄었기 때문에 이 부담금의 총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필요하다라는 논리가 세상에 그런 억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정부 측에서 설명하는 논리가 다분히 이것을 민생으로 규정해 놓은 결정 때문에 무리한 논리들을 계속 끌어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화산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되지가 않아요. 저희들보고 어떻게 설득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지금 예산 확보를 일반회계로 좀 늘려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지는 당연히 보여 줘야 되는 것이지요. 보여 주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만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게 민생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문제를 민생으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어도……

지금까지 정부도 필요 때문에 계속 연장, 연장을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예를 들어 다른 부과금들을 폐지해서 국민들 민생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 이 문제만큼은 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특별하게 결단을 해서 바로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정해 놓은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중단하고 영화인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찾고 그중에 이 부담금을 유지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현 위원** 부과금과 관련돼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오해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부 내부에서도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셨던 부과금 관련돼서 정부가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과금 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영발기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영화부과금을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 얼마 전에 방통위에서 OTT 방송발전기금 납부 연구용역을 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부과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OTT에 관련돼서 부과금을 염두에 둔 용역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있는 거지요. 부과금 체계에 대해서 가능하면 줄여 간다는 전체적인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방통위에서 이런 것 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적용하려고 하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영화, 저는 선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로 늘려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까 팔백몇억에서 천몇억으로 약 백몇억 증액된 얘기 있으셨지요, 내년 예산 관련해서?

○**조계원 위원** 734억에서 820……

○**이기현 위원** 그 내용이 있지만 영발기금하고 또 다른 개념입니다. 예산으로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요. 이 부과금은 국민들이 내는 거잖아요, 별도로. 그렇게 해서 적립하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보셔야 된다, 정부에서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과금은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양 위원님 말씀 주세요.

○**양문석 위원** 그런데 비전문가가 논의를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기는 하나 상식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아까 작년 대비 올해 증액이 얼마나 했지요, 723억?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2024년 금년 예산안이 736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5년 예산안이 828억으로 현재 산정이 됐습니다.

○**양문석 위원** 828억.

지금 260억 정도가 부담금이잖아요, 부과금? 지금 17페이지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아, 구석 부분.

○**양문석 위원** 예, 별써 여기에서도 반토막이잖아, 그렇지요? 여기서 한 100억이 채 못 되는 정도, 736에서 828로 올린다 하더라도 100억이 채 못 되는데 260억을 날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60억 정도가 여기에서 구멍이 나는 거예요, 예산을 일반예산을 올려도.

두 번째, 828억을 기재부에 올린다고 한들 기재부가 다 안 받아줘, 여기에 대해서 또 기재부가 대폭 삭감할 거야. 그다음에 국회 들어와서 또 이러저런 이유로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828억을 지킨다고 자신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인 예산의 과정에 있어서. 증액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그런데 감액될 가능성은 아주 높아. 그렇지요?

그랬었을 때 부과금이 영화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다음에 일반예산으로 예산 증액을 통해서 영화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 나지요. 그렇지요? 대답을 해 보세요. 산수만, 이면·음모 이런 거 빼고 말하는 대로만. 산수로만 하잖아요, 산수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일단 828억은 정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돼서 최종적인 정부안이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삭감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보면 세목별로는 합의가 돼도 나중에 큰 덩어리에서 쑥쑥 빼잖아요. 삭감하잖아요, 큰 덩어리에서. 그러면 세목이 자연스럽게 또 조정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화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문체부가 어디에다가 손댈 거야? ‘여기에다 손대면 어떡해, 문체부를 어떻게 믿어’ 지금 이러는 게 영화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수로 해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 건 맞지요? 한 160억 날아가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그 부분은 조금……

○**양문석 위원** 아니, 잠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아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으로 조성됐던 금액 자체가 기존에 500억 내외 정도였다가 코로나 시기에 한 150억 정도로 줄었다가……

○**양문석 위원** 우리 표 볼 줄 알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이후에 250억 정도로까지밖에 복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500억 전체를 갖다가 복구한다는 개념으로 비교를 하시게 되면……

○**양문석 위원** 아니, 잠깐……

○**소위원장 박정하**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 기본 주시고자 하는 말씀 취지는 다 전달된 거지요?

○**양문석 위원**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소위원장 박정하**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양문석 위원** 한 번만 더…… 아, 정말 왜 그래요.

736억에서 828억으로 증액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260억을 빼 버리면 오히려 736억보다 적어지지요? 한 160억 정도 적어져요. 그러면 지금 1차관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증액시켰잖아,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부과금을 빼 버리면 훨씬 더 적어진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19년에 500억, 23년에 260억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산수가 잘못된 걸 증명

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콘텐츠국장이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예,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올해까지는 부과금이 살아 있고요. 그래서 260억, 250억이 들어간 거였고요. 내년부터 만약에 폐지되면 그 부분이 빠집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플러스가 더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조계원 위원 여기 2023년으로 돼 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올해 게 아니잖아요, 이거.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올해까지는 부과금이 살아 있다는 거지요, 올해까지는 존속을 하니까. 그래서 1년에 250억~260억이 들어오는데 내년 예산에는 올해가 살아 있으니까 내년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후에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250억~260억이라는 부분이 더 플러스가 되어야겠지요, 지금 80억~90억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조계원 위원 일반회계로 플러스가 된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문석 위원 아니 잠깐, 여기에 올해 예산 736억이 260…… 부과금이 포함된 예산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포함된 겁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포함된 예산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내년에 한 300억 정도 된단 말이야,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양문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260억을 빼면 550억 정도 되는데 300억 더하고 또 일반예산으로 증액하면 내년에 1000억 정도 예산 계획을 세워야 거의 비슷한, 여러분들이 여기 법에 손을 안 댄 효과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정도 돼요. 내년에 1000억 정도를 여러분들이 예산 돌파 가능해요, 문화부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아니, 예산 과정 다 아시겠지만요 영화라는 산업이 굉장히 과급효과가 크고 여러 가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줄인다 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콘텐츠산업은 다 정부 일반회계로 하는데 왜 영화만 부과금을 걷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일반인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른 콘텐츠, 게임이든 케이팝이든 다른 부분은 다 일반회계로만 하는데 왜 영화만 부과금을 걷어서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시키느냐, 그럼 영화도 일반회계로 전체를 다 전환해서 부과금 걷지 마라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국장님, 됐습니다.

자, 제가 회의 진행하는 상황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밤새도록 토론할 것 같아요. 조 위원님하고 아까 강유정 위원님하고 양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안이나 정연욱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일리가 있고 해서 지금 문제가 없는, 논쟁이 없는 21항부터 22항은 위원회안으로 대안을 만들고 문제가 되고 있는

23~25항까지는 계류해서 정부 측에서 충분히 설명을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양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250억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1, 2년 후에 가면 지금의 250억이 25억이 안 되라는 법은 또 없는 거잖아요. 25억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 주시고, 영화인들 애타는 마음에 대해서도 감안하셔서 설명 주시고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도 구해 가지고 이것은 다음 법안소위 때 심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1항 및 22항, 2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3항부터 25항까지 3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2시간이 좀 넘는데요, 아까 두 건을 말미에 하기로 했지요? 지금 남아 있는 두 건을 처리하고 잠깐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까 게임산업 관련해서 부딪히는 부분을 조율하시고 다 끓어서 한 10분 후에 다시 개회를 할까요?

○조계원 위원 10분 쉬었다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정하 그럼 10분만 정회를 하고 바로 양문석 위원님하고 조 위원님 부딪히는 부분 정리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10분 정회하고 2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정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6항 한류기본법안과 의사일정 27항 한류산업진흥법안, 이상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은 제정안으로 분량이 상당하므로 항목별로 하나씩 결정하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아까 10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과되는 건데 그게 지금 남았을까요, 의견이?

○소위원장 박정하 10항?

○김재원 위원 10항에 아까 누락시키신 게 있는데 그게……

○강유정 위원 표준계약서 문제라서, 같은 거라서……

○소위원장 박정하 우리 넘어간 거였지요, 이따가 얘기하기로 한 것?

○김재원 위원 예, 그런데 똑같은 거였습니다.

○강유정 위원 예, 같은 법안이라서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했던 표준계약서 법안이라……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아까 통과된 겁니다.

○강유정 위원 통과된 것 확인을 제가, 하나만 더……

○행정실장 이유주 아니요, 아직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 10항만 의결 안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것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섞어서?

○강유정 위원 통과를 안 했어요. 통과를 안 해서, 그건 통과 의견 맞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정하 10항은 묶어서 하려고 아까 통과 안 했던 거예요?

○행정실장 이유주 예, 10항과 11항, 12항에 논란이 있어서……

○소위원장 박정하 묶어서 하려고 했던 거지요?

○행정실장 이유주 예, 그때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런데 10항은 아까 표준계약서……

하나 더 있는데요, 똑같은 결로 19번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아까 이것 넘어가는 결로, 통과하는 결로?

○김재원 위원 아니, 이것은 통과한 결로 알고 있는데요.

○조계원 위원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이따가 얘기하려고 뒤로 미뤄 놓은 거예요.

○강유정 위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까 과태료 부분, 과태료 제가 수정하는 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조계원 위원 아, 그건 통과했어요.

○강유정 위원 맞습니다. 그것 확인을 하려고요.

○소위원장 박정하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심사자료 1쪽에 보시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있고요, 임오경 의원안과 박정하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제정안의 구성체계가 있는데 임오경 의원안이 25조까지, 박정하 의원안 18조 대비 조항이 더 많습니다.

5쪽에 보시면 공청회의 진술 내용이 있는데 작년 9월 20일에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으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진술인 두 분이 진술을 하셨고요, 6쪽에 보시면 공청회 때 질의 답변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7쪽의 법률 제정 필요성입니다. 이 제정안은 문체부가 범부처 한류 정책을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각종 한류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류 및 관련 산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한류 지원과 관련된 법률체계를 보면 한류의 주요 구성요소인 문화산업에 관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음악·게임·관광 등 한류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개별법은 있으나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콘텐츠의 다양화 및 타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한 신한류 시대에 한류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인데요. 이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거의 없고 조문별로 제명, 정의 부분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명, 목적, 정의 이 3개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의 제명과 관련해서 임오경 의원안은 한류기본법, 박정하 의원안은 한류산업진흥법으로 제명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법은 특정 분야에서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 원칙, 기본방침, 내용의 대강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모법이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입니다. 국토기본법, 교육기본법 이런 법들이 있고요. 그런데 밑의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최근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가진 법률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유형도 다양해짐에 따라 실체적인 규정을 담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법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진흥법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산업, 계층, 문화, 지역 등을 진흥·조성·육성·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는 법입니다. 밑에 밑에 줄, 관련 산업 분야의 시장이 형성되거나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경우 등에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됩니다.

9쪽에, 각 법안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포괄적·추상적 규정보다는 한류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이 대부분이며 통상적인 산업진흥법의 구성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제명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양문석 위원** 잠깐만요, 입법 정책적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양쪽 다 선택이 가능하신데 이게 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정무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된다, 둘다 틀리지 않다 그런 취지입니다.

10쪽의 목적 우측의 대체토론 부분 보시면 임오경 의원안은 한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려는 데 비해 박정하 의원안은 한류로 파생된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법안 내용이 한류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목적 규정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3쪽의 정의 부분인데요. 임오경 의원안은 용어가 한류, 한류콘텐츠, 그다음 14쪽 보시면 한류연관산업, 한류사업자 이렇게 해서 제명으로 보면 두 번째 한류콘텐츠 부분이…… 박정하 의원안은 한류, 한류산업, 한류연관산업, 한류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한류콘텐츠와 한류산업 이 부분이 제일 크게 다르고요, 용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세부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보고 쪽에 보시면 한류에 대해 임오경 의원안은 문화현상과 이에 연관된 산업 전반으로 폭넓게 정의한 데 비해서 박정하 의원안은 한류를 문화현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맨 밑의 동그라미에 임오경 의원안은 한류콘텐츠를 문화적 요소를 가공하여 생산·유통·소비할 수 있도록 콘텐츠화한 것으로 정의함에 따라 한류상품으로서의 한류콘텐

츠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한류콘텐츠보다 한류산업은 좀 더 큰 개념입니다. 한류콘텐츠는 한류산업을 통해 생산되는 재화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한류산업을 통해 포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14쪽 우측에 보시면 임오경 의원안은 한류와 관련된 문화산업 및 연관산업을 통틀어 한류연관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박정하 의원안은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밑에 밑에, 한류연관산업은 한류산업 외에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세부적인 산업을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을 구분하여 정의할 경우에 한류사업자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전반적인 내용에서 전문위원 의견과 일치를 하고요. 다만 조문에서 사소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조문 순서 부분에서 3조……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정의 조항만……

○**소위원장 박정하** 어떻게……

○**박수현 위원** 우선 정의 조항만 말씀해 보시지요, 너무 많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정의 조항 부분에서는 의견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 제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쓸 거냐의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법체계 안에서 기본법이라는 용어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류산업 기본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이게 최근에 패션 한류라든가 한식 한류라든가 다른 여러 부처에서 이 한류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 같은 경우도 지금 해수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바다를 활용한 관광 관련된 것들의 입법 진행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류에 관해서도 앞으로 다양한 입법이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할 때 박정하 의원님의 안과 임오경 의원님의 안을 믹스해서, 두 개를 묶어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정도로 용어를 정리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여기까지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양문석 위원** 제가 방통위에 있었을 때 입법 과정에서, 방통위가 정부입법하는 것보다 여권을 통해서 의원입법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위원장 박정하** 훨씬 절차가 쉬우니까.

○**양문석 위원** 그래서 이게 박정하 의원님의 단독 의견인지, 안 그러면 문화부하고 이야기가 된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빨리빨리 속도가 나갈 수 있는데, 어때요?

○**소위원장 박정하** 이것은 마이크 끄고 얘기해야 되나요? 같이 협의한 안입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 1번 협의, 2번 단독인데……

○**소위원장 박정하** 1번.

○**박수현 위원** 그런 중요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물어보면 어떡해.

○**양문석 위원** 아니, 박정하 위원님 진짜 솔직한 사람이거든.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니까 진행 빨리 해야지요, 오래 걸렸어.

○**양문석 위원** 그래서 알고 가야 되니까, 오케이.

○**소위원장 박정하**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양문석 위원**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진홍 기본법으로 가자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박수현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정법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는 어떤 제도, 정책에 관한 이념, 원칙, 기본 방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겠고요. 그러면서 또 현재적 입장을 생각하면 산업적 측면의 어떤 육성, 진홍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함께 들어가 주어야 현재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 측의 제안대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정도로 제명을 그렇게 합하면 기본적인 어떤 요소와 그다음에 현재적 산업진흥에 관한 요소를 함께 다 포괄할 수 있는 적정한 제명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저도 소위원장 아니라 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법안 제목에 대해서 크게 고집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그러면 뒷부분 수석전문위원님 더 설명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적이나 정의 부분은 조문대비표에 조정의견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것은 문체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실무적으로 점검해서 한 부분이니까 조문 자료의 조정의견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기본이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의 기본이념은 각 법안은 한류의 영향력 인식, 한류콘텐츠·산업 등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오경 의원안은 보다 포괄적·추가적으로 한류의 보편성·개방성·다양성의 원리 실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오경 의원안이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임오경 의원안을 바탕으로 조문을 병합하는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요.

다만 그 순서는 지금 기본이념을 3조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본이념이 목적 규정을 보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있기 때문에 2조로 순서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양문석 위원** 저 눈빛은 질의하지 말라는 눈빛이……

○**소위원장 박정하** 아니에요.

○**양문석 위원** 내가 그래서 졸려서 질문을 못 하겠어.

○**소위원장 박정하** 여기까지……

○**박수현 위원** 속기사 선생님께서 회의록을 기록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뭐 맨날 싸우는 것만 회의록에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소위원장 박정하** 여기까지 하고 수석전문위원님 추가 또 설명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21쪽, 책무 부분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데 우측에 보시면 임오경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고 박정하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간 차별성 및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성격을 고려해서 각 조문을 병합하여 조정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부분부터 수석전문위원 말씀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24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요. 임오경 의원안은 한류 정책의 추진 및 한류콘텐츠, 연관산업에 관한 타 법과의 관계를 명시하면서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있어 제정법의 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박정하 의원안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타 법과의 관계를 명시하면서 다른 법률의 우선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임오경 의원안이 조금 더 강하고 박정하 의원안이 좀 더 유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전문위원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지요?

○**박수현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읽어 봐도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대로 서로 방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두 분 의원안이 다른데 그러면 어느 의원안을 중심으로 병합을 할 건지 의견을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정하** 이것 다 하고 난 다음에 말씀 주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수석님 말씀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26쪽에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박정하 의원안처럼 돼 있습니다. 임오경 의원안에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이 좀 더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박정하 의원안으로 하자고 제시한 것입니다.

○**조계원 위원** 유연하게 하겠다 이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27쪽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부분입니다.

이 명칭이 두 안이 좀 다릅니다. 한류정책기본계획,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고요.

수립 절차는 임오경 의원안이 좀 더 세밀하고 단계가 많습니다. 문체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하고 문체부는 다 받아서 종합계획안을 수립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박정하 의원안은 관계기관에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협조를 요청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8쪽에 협조 요청 대상 관련해서 박정하 의원안에 관계행정기관, 지자체 등등하면서 개인이 있는데 개인까지 하는 부분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서 단체로 제한하자고, 단체까지 하자고 지금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시행계획 관련해서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임오경 의원안이 조금 더 세부적이고요.

다만 박정하 의원안으로 조정안을 하는데 박정하 의원안에는 이 시행계획 부분이 한류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부분이 표시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조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33쪽의 실태조사 부분인데 임오경 의원안은 5년마다, 박정하 의원안은 정기적으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면 너무 텁이 길고 정기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래쪽에 있는 '한편' 부분인데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항에 한꺼번에 표현하는 것이, 다른 입법례처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부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36쪽에 보시면 연차보고서 부분이 있는데요, 연차보고서는 임오경 의원안에는 있고 박정하 의원안에는 없습니다.

연차보고서라는 부분이 가운데 동그라미 부분 보시면 개별법에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결정하시면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조정안에는 연차보고서가 반영되는 것으로 38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연차보고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39쪽에 위원회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회 이름이 한류정책심의위원회, 한류진흥위원회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위원장, 위원 수, 위원 구성, 임기, 간사, 다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임오경 의원안에는 위원회가 국무총리 위원장이고요 한류진흥위원회는 문체부장관이 위원장이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나 K-콘텐츠 수출협의회 등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문석 위원** 마지막 이야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국조실, 행안부에서는 이 개정안처럼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라고 의견을 준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이해되셨어요, 양 위원님?

○**양문석 위원** 그런데 행안부는, 국무총리실이 의견을 내라 그러는데 행안부가 왜 거기 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정부조직 신설은 행안부 소관 업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정부에서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하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위원회나 총리 위원회로 과도하게 격상되어 있는 위원회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관 위원회로 낮추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개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한류진흥위원회를 두는 것으로서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이 법안 심의하기 위해서 검토하실 때 전문위원회에서 각각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다 구합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수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체부장관으로 조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으나 이 제정법안의 중요성상 이것을 국무총리 소관으로 하는 의견을 속기록에 기록하고자 합니다. 이게 대체로 지금 장관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도 아니고 동의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본법을 가지고 새로운 체계를 출발시키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가야 되는, 새로운 신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에 국가의 역량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동원해 내기 위해서는 좀 더 격상된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조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으나 그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의지로, 강도로 출범하게 되면 그렇게 역할과 기능을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양문석 위원** 입법정신이 금세 사라져요. 그렇게 필요하면 국무총리 라인까지 올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입법정신이 사라지는 꼴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IPTV 특별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원회 무슨 특별법 이런 것들이 다 입법정신 제가 쓸 때는 정말 진지하게 온갖 정신을 다 넣었는데 문자만 남더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문화부1차관이 영원히 1차관 할 것도 아니고 우리 박정하 소위원장님이 계속해서 소위원장 할 것도 아니면 애초에 우리 박수현 위원님의 의지를 담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역량을 동원하는 이러한 임오경 안을 그대로 가는 게 나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국가적 인식이 제고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대체·검토보고 요지에는 총리 소속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콘텐츠산업진흥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 문체부로 가더라도 K-콘텐츠 수출협의회를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한류 앞에 산업이라든지 산업과 관련된 다른 산업의 상품까지도 수출을 증진시킨다든지 이런 방안을 논의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콘텐츠에만 한정되어서 그동안 일을 하던 이런 수출협의회의 활동이 너무 제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래 박정하 의원님이나 임오경 의원님이 내신 안대로 위원회를 지금 줄이는 줄이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인식적 제고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능을 고려해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기현 위원 저도 말씀드리면 이 앞에 저희가 한류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했잖아요. 그 개념과 기준에 총리실 밑에 있었던 콘텐츠산업진흥, 콘텐츠하고 한류라고 하는 것은 소비 형태, 현상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정부에서 일할 때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많고 총리실 소속 위원회가 많아서 하다 보면 몇백 개 되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만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류산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제조업 강국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결국 콘텐츠 강국으로 가야 된다는 지점에서 보면 총리실 산하로 가고 명칭도 한류라는 표현을 명확히 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제가 빌의자로서 말씀드리면 우리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동의하는데 그전에도 보면 이렇게 빌의한 이유가 총리실이나 대통령 관계로 하면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형식적으로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좀 더 스피디하게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장관 직속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빌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빌의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매우 실무적인 의견인데요. 일단 이게 저희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가는 과정에서 타 상임위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총리실이나 행안부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공연히 또 그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실질 진행을 하다 보면

총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 총리님 일정 잡는 것 자체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개최하기도 쉽지는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문체부장관으로 하되 안에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관료가 12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인 성과 면에서는 장관 주재 위원회가 좀 더 실질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총리 산하 위원회든 장관 산하 위원회든 총리나 장관이 참가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다 대리로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무적이거나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둘 다 차관들이 나오거나 국무조정실장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는 별 설득력이 없다. 두 번째, 법사위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는 실제 이게 한류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이 되면 법사위가 굳이 여기에서 태클을 걸 이유가 없다. 해서 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안이 훨씬 더 위력 있는 안이면 위력 있는 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라떼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 때도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대리로 참석해서 실질적인 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말씀……

○**김재원 위원** 총리 소속이면 행안부……

○**이기현 위원** 그게 아니라 조직을 총리실에다 설치하려면 직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행안부가 손을 대고 인원도 배치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총리실 산하 위원회화 되더라도 어차피 문체부장관이 간사 역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박정하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문체부 소관으로 두고 차관회의로 간다고 해도, 사실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힘 있게 진행되느냐면 제가 총리실 산하 위원회도 굉장히 스피디하고 정확하게 일 잘하는 곳들 많이 봤거든요. 그 해당 주무 장관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양문석 위원** 대통령실에서 하는 차관회의도 비슷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위원** 위원들은 대참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재자는 변경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총리님 일정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 사실 좀 난처함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기현 위원** 그런데 총리가 직접적으로 회의 주재하신다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총리실에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양문석 위원** 이기현 위원님이 해 봐서 안다 이런 말씀이신데 동의해요, 나는.

○**이기현 위원** 제가 뭘 위원회를 해 보지는 않았어요. 옆에서 봤지요.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 위원님들 지금 총리실 위원회 많이 말씀하시는는데 정부 더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위원** 그러시면 총리 위원회로 가시더라도 아마 법사위 가는 과정에서 부처 의견을 또 청취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부처에서 의견이 나오면 의견을 해소할 때까지 계류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단계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조정안을 만드는 것을 그렇게……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우리 법안소위……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국무조정실이나 행안부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설치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콘텐츠산업 이게 범위가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두 단계를 높여서 총리 소속으로 하면 이제 진행 과정에서 좀 진행이 어려울 소지가 더 높아지는……

○소위원장 박정하 어렵고 이 법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위원회 자체가 진행이 안될 수 있는, 법안 내용 중에,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사위에서는 부처의 의견이 있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기간이 좀 지연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큽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여전히 총리실 산하, 장관 산하, 어떻게? 의견 주세요.

○박수현 위원 제가 처음에 의견을 낸 사람으로 정리를 좀 일단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만큼 이 위원회와 기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소위원회의 의견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전달이 되고 또 모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 법이 통과되어서 집행이 되더라도 우리 문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의 이 회의를 잘 기억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성과 있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오늘 회의의 위원님들의 정신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선에서 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 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박수현 위원님 말씀에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수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문체부에서 잘 챙겨 보고……

○조계원 위원 박수현 위원님 얘기는 어쨌든 의미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정도로 국가적인 과업으로서 이 위원회를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고, 취지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끌어감에 있어서는 문체부 산하에 두는 게 맞겠다 이걸로 지금 정리하신 거지요?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귀한 말씀들 다 속기록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 문체부에서 잘 감안하시고, 저희 문체위 차원에서도 이 위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온 힘을 모아서 다 같이 노력하시는 걸로 정리하고 원안대로 이 부분까지는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부분 말씀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44쪽의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임오경 의원안은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 인력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박정하 의원안은 인력양성 시책 마련, 인력양성 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쪽 동그라미 보시면 임오경 안은 분야별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은 빼

고 양 조문을 통합해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추가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47쪽의 연구개발의 촉진입니다.

이거는 임오경 의원안에만 있는데 국가 및 지자체의 한류 관련 연구개발 우선 추진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한류산업 발전 및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50쪽의 정보시스템 부분입니다.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임오경 의원안은 한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박정하 의원안은 한류사업자의 한류산업 등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임오경 의원안에서 9조의 연차보고서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연차보고서가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요.

한편 데이터 조사·연구를 위한 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는데, 임오경 의원안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런 입법례가 많지 않고 동 위원회는 단순 자문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윤호성**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뒷부분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54쪽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국제교류, 해외진출 지원 이 부분은 다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임오경 의원안과 박정하 의원안이 내용은 비슷한데 형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체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임오경 의원안은 14조와 19조로 나뉘어져 있고요. 박정하 의원안은 19조에 이게 통합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56쪽 보시면 박정하 의원

안이 이렇게 각 호로 통합돼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사한 내용인데 박정하 의원안처럼 12조에 통합해서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음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59쪽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입니다.

대체토론에 임오경 의원안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기술적 보호조치 개발 지원, 관계기관 협조 등을, 박정하 의원안은 지재권의 해외 출원 및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법안 취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병합해서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뒤쪽 61쪽에 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이것 보시면 임오경 의원안의 내용이 더 많은데 대부분 반영해서 합쳐서 61쪽에 조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62쪽의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임오경 의원안에서만 한류 활성화 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체부가 해외 한류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추가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65쪽의 창업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임오경 의원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한류 관련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박정하 의원안은 한류산업 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밑에 밑에 동그라미에 임오경 의원안은 신산업·기술창업 등과 관련한 협력체계 구축, 인프라 등 공동 활용, 보육 공간 설치, 자금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다만 이 법에 신산업창업이나 기술창업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67쪽에 보듯이 박정하 의원안처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지는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69쪽의 투자·융자 지원인데요.

임오경 의원안에만 있는데 세 부분이 규정돼 있습니다. 대기업과 한류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책 마련,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는 한류사업자를 포함한 것으로 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쪽 두 부분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세 번째 부분은 이 부분이 사실상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타 법 개정에 해당되어서 법리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 우측 검토의견 맨 마지막에 보시면 금융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고 두 부분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그런데 임오경 의원실, 발의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굳이 이 내용을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나요, 제가? 아니아니,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한 흔적이 있어서……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이 신기술사업자라는 게 벤처투자나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류는 사실 신기술이 아닌데 이 법을 제정하면서 신기술사업자도 추가가 되면 투자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류업계 쪽에서 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체계상 내용을 개정하려면 그 법에서 개정해야지 이 법에서 개정을 못 하고, 타 법 개정은 단순히 자구나 이쪽에 반영된 것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의욕이 넘쳤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추가되는, 이어지는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72쪽에 전담기관이 있는데 명칭이 다른데 이 전담기관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임오경 안에는 전담기관 지정만 있고 지정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취소 부분도 요건이 안 되거나 위반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박정하 의원안처럼 지정취소를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부분이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박정하 의원안 가운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전담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측 대체토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거나 이런 경우에 관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두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약간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조정안에는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혹시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지는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76쪽의 지방자치단체의 한류사업 지원입니다.

임오경 의원안에 있는 부분인데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한류 확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맨 아래쪽에 ‘1·2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표현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에 한류사업자 지원사업이 반드시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고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이어지는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79쪽의 조세 감면 부분인데, 법에 많이 반영하는 부분인데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조치를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는 항상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조세특례제한 규정은 어차피 그 법에 반영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항상 주고 있고요. 일부 개별법에 반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지방세법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부분이 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지는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82쪽의 협회 설립과 관련해서 임오경 의원안에만 있는데 동 규정은 한류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중심의 한류 확산 활성화

를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지는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85쪽의 국고 보조와 관련해서 임오경 의원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정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모든 사업에 해당되는 포괄적인 규정이고요. 86쪽에 보시면 보조금 관리법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삭제하자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이어지는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87쪽 감독 부분입니다.

임오경 의원안은 문체부장관의 협회 및 기금 관리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까 협회 설립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감독 규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이어지는 부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90쪽의 권한 위임 부분인데 권한 위임 부분은 필요합니다. 다만 권한 위임할 때 업무 수행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뒤에까지 다 섞어서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예. 그러면 93쪽의 과태료 부분은 박정하 의원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부분이 들어가면 과태료도 규정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6쪽의 부칙(시행일) 말씀드리면 임오경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고 박정하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인데 부처에서 6개월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해 놨는데 이게 아까 우리 나왔던 얘기 중에 타 법과의 형평성 부분에서 2000만 원이 형평성이 맞다는 것 아니었어요?

○**소위원장 박정하** 2000만 원이, 아까 그랬지요.

○**박수현 위원** 아니, 대체로 다른 법은 어떠냐고……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타 법, 다른 법에서 1000만 원을 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도 유사한 내용에서 직무상 비밀 유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개괄을 해 봤는데 위원님들, 혹시 특별하게 더 지적하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김재원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협회 설립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대한체육회 생각이 자꾸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체육회처럼 그렇게 이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조정하게 되면 이 협회가 또 권력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현재 법안 규정 중에서 전담기관 지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기관으로서 아마 현재 저희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 중에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기왕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을 저희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대한체육회 같은 그런 민간협회가 전횡을 하든가 이런 우려는 상당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한류기본법안과 의사일정 제27항 한류산업진흥법안, 이상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법이 있는데 이것은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아까 넘겼던 2건 있지요? 그것 하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 3건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 전문위원께서 설명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특별히 설명 주실 게 없으면 우선 정부에서 아까 조문 검토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설명 주시고 정부안 설명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아까 두 꼭지인데 표준계약서 부분은 내용이 확정돼 있고 신기술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계원 위원님께서 정의 부분에 이 부분을 옮기자고, 반

영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의 부분에 규정을 하게 되면 법 전체적으로 체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결정할 수는 없고요. 현재 8~9쪽에 수정의견 제시돼 있는 부분으로 논의를, 이 부분을 보고 확정을 하신다면 지금 결정하실 수 있고, 지금 봤을 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전문위원실에서는 계류해서 넘기자는 안을 제시한 것이고, 맞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예, 정의 조항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계류하고 다음번에 논의하시는 걸로……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은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저희는 관련된 산업이 위낙 빨리 변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크리티컬하게 아주 논쟁이 되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있는 조항에 두더라도, 사실은 거기가 창작·제작·유통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 규정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구현에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위원** 지금 이게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21대의 내용은 뭐였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현재 원안……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지금 심사자료 8쪽에 보시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문구가 있습니다. 지난번 21대 때 통과했던 부분은 ‘정부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21대 때도 신기술을 넣긴 했는데 정의 부분에 넣지 않고 별도로 넣었다는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예, 12조에 반영했습니다.

○**박수현 위원** 12조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9조에 그렇게 하자는 것과 21대 12조 이 체계는 많이 다른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용호성** 21대 때는 융합콘텐츠 부분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조항을 고려하는 것은 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기를 제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문 제목은 제작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창작·유통·이용이라는 게 생산·유통·소비 영역을 포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의 규정으로 굳이 옮기지 않더라도 내용이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수현 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건 아니고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계원 위원님 의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창작·유통·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9조 콘텐츠제작의 조문에 담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담아서 녹여 내는 게 필요하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정의로 담을 경우에는 또 다른 관련 조항과의 관계들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번에 이것을 처리하시지요.

그렇게 급합니까? 그런데 21대부터 어쨌든 이어져 왔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정하** 이게 묵어 있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처리하고 그려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처리해서 넘어가는 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조 위원님 정 이렇게 말씀 주시면…… 그렇게 계속 저기 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계류되는 법안이 계속 쌓이다 보면 또 다음번에 논의 하실 법안에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책이나 사업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조 위원님 마지막 의견 구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저는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김재원 위원** 저는 다만 제작은 창작의 단계에 들어가는 얘기고 유통이나 이용 같은 경우에는 제작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개념은 아닌데 왜 조문을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좀 잘하지.

다음에 합시다. 조계원 위원 유일하게 지금 강력하게 입장 한번 냈는데……

○**소위원장 박정하**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11항부터 12항까지 2건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하나 아까 넘겼던 것, 의사일정 17항부터 20항, 4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네 꼭지가 있는데 아까 심사하면서 1·2·3번 항목은 다 결정을 했고요 마지막에 22쪽에 있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22쪽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이 건에 대해서 정부안 있으시면 설명을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징벌적 조항에 관한 부분이 관련 업계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징벌적 조항에 관한 부분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비자 보호라든가 전반적인 업계 환경을 고려해서 이번에 마무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징벌적이라는 조문을 빼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예, 그러니까 2배로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조항 부분, 그 문구만 드러내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기현 위원** 수정제안에서 징벌적이라는 조항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남겨 놓고, 다만 시행시기를 한 1년 정도 늦추는 것으로 해서 가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안 한번 해 봅니다.

○**강유정 위원** 어쨌든 확률형 아이템 게임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많이 적

체되어 있던 건 사실이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법은 뭐 하나라는 불만들을 가진 게임 사용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법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게 게임산업의 발전과 속도를 맞춰 가면서 피해자에 대한…… 저는 오히려 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을 남기긴 남기되 일종의 법이 갖고 있는 효력에 대한 계도 기간도 필요하고 저도 이기현 위원님과 동의하는 바로 즉각적인 발효보다, 3월에 일단은 어떤 식의 제도적인 하나의 결음을 내디뎠으니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양문석 위원** 정벌적 손해배상제는 살려야 되고요. 그리고 2배 정도로는 아무도 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맞춰서 3~5배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고의성·악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제대로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은 애초의 입법정신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도 유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거치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1년 정도를 거치하고 가 보자 이게 우리 내부의 기본적인 회의 내용 아니었나요? 그렇지요? 이해하셨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융호성** 그러면 저희 정부 의견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조항을 유지하되 중간에 시행 시기에 관한 부분을 조금 늦춰서 정부의 의지는 보여 주되 그 기간에 관련된, 중간에 업계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조정 여지를 해서 살리는 쪽으로……

○**양문석 위원** ‘유지하되’가 아니고 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2배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3~5배 사이로 팔호 쳐서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누가 세상에 2배에 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표현을 써요?

○**소위원장 박정하** 양문석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요.

이 위원님……

○**양문석 위원** 그런데 ‘유지’라고 저렇게 정리를 해 버리면 2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2배를 갖다가 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지 않거든.

○**강유정 위원** 저도 양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게 2배가 적당할지, 오히려 더 해야 될지 자체도 조금 더 논의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벌적 손해배상제는.

○**소위원장 박정하** 이기현 위원님 말씀.

○**이기현 위원** 계속 논의로 넘기고요. 법안을 김승수 위원님 내셨지만 저희도 관련돼서 법안을 하나 더 내서, 특히 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 그리고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좀 조정해서 법률안을 한번 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회의 때는 병합해서라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지금까지 합의된 부분은 정리하고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류해서 다음에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나치게 유예기간을 너무 두면 손해 보는 소비자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의견 개진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주시고 그것을 좀 정리해 주세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19항까지 3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 의사일정 제20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면 앞부분 세 항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체1차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차관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및 29항, 2건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전체 여섯 꼭지인데 한꺼번에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 위촉 요건 대상 분야를 현행 10년 이상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서 공예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8개 업무 분야 외에도 고고, 민속, 전통조경 등에 대한 업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불교 고고학, 민속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4쪽의 두 번째, 전문공사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전문 공사업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법 5조의2의 규정과 관련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대상 조항을 제5조 1항 본문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이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도록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7쪽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줄에 보시면 현재 무형유산 보유자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서 전승교육사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을 인정해서 국가유산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무형유산 전승교육사는 일정 기간 전승 활동을 하고 충분한 기량과 실적을 갖춘 사람으로 법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12쪽입니다. 부실 수리업체 제재 부분인데요.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이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자본금 외의 기술능력, 시설 등의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유산수리 종사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 규정은 기간 제한 없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로만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입법례는 5년간 3회 이렇게 입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18쪽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기준 관련해서인데요.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고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맨 아래쪽 동그라미에 보시면 경비업법의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선박직원법의 해기사 자격 등은 연령 제한이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21쪽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경우인데요.

개정안은 벽지를 바르거나 안내판을 설치·보수하는 등 전문적인 수리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 국가유산청장 등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설계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 보완, 수리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6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이상 6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이경훈** 기본적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입장이 동일합니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국가유산수리 운영을 위해서 모두 필요하고 또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은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다 동의하는데요, 하나 학력 규정 관련돼서는 조금 굳이 아래야 하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18페이지 보면 ‘개정안은 18세 미만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굳이 필요한 조항일까 싶어서요.

○**국가유산청차장 이경훈**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선거권 연령부터 해서 또 공무원 응시자격까지 해서 18세로 이렇게 낮추는 추세에 있다고……

○**이기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8세로 낮추는 것은 동의하는데요 그 앞에 학력 규정을 왜 넣느냐는 얘기입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이경훈** 학력 규정이오?

○**소위원장 박정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이경훈** 그런 것을 예시로 든 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이기현 위원** 예, 잘못 봤네요.

○**소위원장 박정하** 다른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국가유산청차장 이경훈** 제가 추가적으로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좀 부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의 수정의견란에 보면 35조가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35조는 시도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는 그런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법 취지가, 입법 내용이 국가전승교육사뿐만 아니고 시도 지정 전승교육사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근거 조항인 법 제35조도 이 개정안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조계원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수정의견으로?

○**국가유산청차장 이경훈** 예, 그런데 개정안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수정의견으로 그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체계·자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제가 아까 보고를 안 드렸는데 이게 국가유산수리기능자에 이 부분이 시도에서도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은 유산수리기능사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반영하는 것이, 지금 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예, 그래서 소위 자료의 수정의견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신 겁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관련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총 2건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그리고 국가유산청 이경훈 차장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유정 김재원 박수현 박정하 양문석 이기현 정연욱 조계원

○**첨가 위원(1인)**

신동욱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입법심의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융호성

문화정책관 이해돈

예술정책관 신은향

국제문화정책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국가유산청

차장 이경훈

문화유산국장 이종희